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¹⁾

I. 사실관계

오스트리아 방송공사(ORF, Österreichischer Rundfunk)는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에 관한 연방법률(ORF-Gesetz, 이하 ‘방송공사법’이라 한다)²⁾에 근거한 공법상 재단이다.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이하 ‘방송공사’라 한다)의 기관은 재단이사회(Stiftungsrat), 사장(Generaldirektor), 시청자위원회(Publikumsrat)로 구성된다.³⁾

방송공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방송공사의 최고감독기구로서 총 35인으로 구성되며, 연방정부가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들의 추천과 의석비례관계를 반영하여 지명하는 6인, 주정부가 지명하는 9인, 연방정부가 지명하는 9인, 시청자위원회에서 지명하는 6인,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명하는 5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방송공사법 제28조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3인은 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가 지명하고, 나머지 17인은 연방총리가 사회단체의 추천 인사풀에서 지명한다.

오스트리아의 연방주인 부르겐란트(Burgenland) 주정부는 방송공사법이 공영방송(öffentlich-rechtlicher Rundfunk)의 감독 및 통제기관 구성에 대해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재단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원 다수가 연방정부 및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인사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부르겐란트 주정부는 이에 관한 방송공사법의 규정이 「방송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1974. 7. 10. 연방헌법률」 제1조 제2항⁴⁾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⁵⁾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법

1)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2023. 10. 5. 결정, G 215/2022-26.

2) Bundesgesetz über den Österreichischen Rundfunk (ORF-Gesetz)

3) **[방송공사법 제19조(오스트리아 방송공사의 조직)]**

제1항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의 기관은 1. 재단이사회, 2. 사장, 3. 시청자위원회로 구성된다.

4) Bundesverfassungsgesetz vom 10. Juli 1974 über die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des Rundfunks. 제1조 제2항의 내용은 이하 III.의 관련 조항의 소개를 참조.

5)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권력 주체의

를 심판을 청구6)하였다.

II. 주문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I. 1. 방송법 제20조 제1항 제1문 제3호 및 제4호, 제20조 제1항 마지막 문
의 “그리고 2.”부분, 제20조 제4항 제2문, 제28조 제4항 및 제5항, 제6항 제1
문, 제29조 제6항 제2문에서 제4문, 제30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한다(해당 법률조항의 특징을 위한 연혁 표기는 생략7))

2. 폐지의 효력은 2025. 3. 31.을 경과하며 발효한다.

3. 이전의 법률 규정은 다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4. 연방총리는 이 결정을 연방관보 I 에 지체 없이 게재할 의무를 진다.

(II ~ IV 생략8))

간섭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 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이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 **[연방헌법(B-VG) 제140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제2호 **연방법률**. 위헌법률심판은 **주정부**, 국민의회 재적 3분의 1 또는 연방상원 재적 3분의 1의 청구로도 개시될 수 있다.

7) 제20조는 2021년, 제28조는 2017년, 제29조는 2021년, 제30조는 2014년에 개정되었다.

8) 이 사건에서 주정부는 심판대상법률조항의 범위와 관련하여 최초의 위헌법률심판청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적인 예비적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최초의 심판청구와 제1차 예비적 심판청구는 각하(주문 IV의 내용)하고, 방송공사법 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제2차 예비적 청구를 기준으로 인용 결정(주문 I의 내용), 기각 결정(주문 II의 내용: 인용부분을 제외한 방송공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제7항, 제28조 제2항, 제3항, 제6항, 제29조 제1항에서 제6항에 대한 기각), 각하 결정(주문 III의 내용: 방송공사법 제20조 제6a항, 제8항에서 제10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4a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제8호, 제2항에서 제5항의 각하)을 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적법 요건을 판단하면서 확인한 주요 법리는 위헌 법률심판 절차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폐지하려는 법률조항의 나머지 부분만 남을 때 법률의 내용이 완전히 변경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고, 폐지하려는 법률조항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항은 포함되도록 위헌법률심판대상을 정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VfSlg. 13.965/1994, 16.542/2002, 16.911/2003). 이에 따라 폐지되고 남는 법률조항의 내용이 언어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내용 없는 법률이 되거나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 되도록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한다면 그러한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추상적 규범통제의 심판청구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범위를 아주 넓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개별구체적인 이의를 논리적이고 심사가능하도록 제시하거나 조항 간의 불가분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이 될 수 있고(VfSlg. 20.000/2015, 20.092/2016), 이 때 심판청구된 조항이 분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심판청구된 대상조항의 일부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VfSlg. 14.802/1997)고 한다. 이 사건 주문 II~IV는 그러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Ⅲ. 관련 조항 및 쟁점

1. 주요 심판대상조항 등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에 관한 연방법(ORF-Gesetz, ‘방송공사법’)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헌 결정된 부분에 밑줄).

제20조 재단이사회

제1항 재단이사회의 구성원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임명된다:

1. 국민의회에서의 정당 의석수와 정당의 추천을 고려하여 연방정부가 6인의 이사를 지명한다(...).
2. 각 주가 1인의 지명권을 가지도록 하여 주정부는 9인의 이사를 지명한다.
3. 9인의 이사를 연방정부가 지명한다.
4. 시청자위원회에서 6인의 이사를 지명한다.
5. 노동헌법률(Arbeitsverfassungsgesetz)의 적용에 따라 중앙노사협의회가 5인의 이사를 지명한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명에서 다음의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인사들이,

1. 이사회에서 다룰 사안에 맞는 사전 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직업적 경험을 통해 개인적·직업적 적합성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2. 오스트리아와 세계 미디어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경제, 과학, 예술 또는 교육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통해 높은 평판을 얻고 있어야 한다.

제4항 이사회의 임기는 첫 소집으로부터 4년으로 하되, 새로 지명된 이사

회가 첫 소집될 때까지로 한다. 임기 중 연방정부가 지명한 위원은 연방대통령이 새로운 연방정부를 지명한 경우에만, 주정부가 지명한 위원은 주의회가 새로운 주정부를 선출한 경우에만, 시청자위원회와 중앙노사협의회가 지명한 위원은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해, 조기에 임기를 종료할 수 있다. (...)

제21조 재단이사회의 임무

제1항 재단이사회는 연방법률에서 정한 임무 외에도 다음의 임무에 대한 의무를 진다.

1. 운영 감독
 2. 사장의 선임과 해임
- (...)

제28조 시청자위원회

제1항 청취자와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에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제3항 시청자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명되어야 한다.

1.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오스트리아 농업회의소 회장단회의, 연방노동회의소 및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연맹에서 각각 1인의 위원을 지명한다.
2. 자영업자연합들은 공동으로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3. 로마가톨릭교회가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4. 개신교회는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5.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정당 영역의 법인에서 각각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6. 학술아카데미에서 1인의 위원을 임명합니다.

제4항 연방총리는 추가 위원의 임명을 위해 대학, 교육, 예술, 스포츠, 청년, 학생, 노인, 장애인, 학부모 또는 가족, 소수민족, 관광, 운전자, 소비자, 환경보호의 분야 또는 그룹을 대표하는 기관 또는 조직에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제5항 연방총리는 제4항에 따라 전자적 공지 및 연방정부 정보플랫폼을 통해 적격의 기관 또는 조직에게 3인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추천하도록 요청하고, 추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항 연방총리는 제4항에 따른 분야 또는 그룹으로부터 접수된 추천에서 17인의 위원을 추가로 지명하여야 하며, 이 때 각 분야별로 1인의 위원을 임명을 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이익은 스스로 장애가 있는 1인이 대변하여야 한다.

제29조 임기, 위원장, 의사결정

제1항 시청자위원회의 임기는 첫 소집으로부터 4년으로 하되, 새로 지명된 위원회가 첫 소집될 때까지로 한다.

제6항 시청자위원회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이 조기에 사임하는 경우, 연방총리는 사임하는 위원이 대변하는 기관 또는 그룹에 추천을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추천은 지체 없이 제출되어야 한다. 연방총리는 제출된 추천 중에서 위원을 지명한다.

제30조 시청자위원회의 임무

제1항 시청자위원회는 다음의 임무에 대해 의무를 진다.

1.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추천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제안

2. 재단이사회 이사 6인의 지명

3. 규제위원회에 대한 이의제기

4. 방송사 시청료 확정에 대한 재단이사회 결의의 승인

(...)

관련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방송의 독립에 관한 연방헌법률(BVG Rundfunk, 이하 ‘방송헌법’이라 한다)⁹⁾

제1조

제2항 방송과 그 조직에 관한 더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그 연방법률은 특히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견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 프로그램의 균형 및 제1항에 따른 임무(역주: 방송의 운영)를 위임받은 구성원과 운영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쟁점 및 요지

(1) 연방헌법재판소는 방송공사법의 재단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율이 연방정부의 과도한 영향력을 인정하여 방송기관의 독립성과 다원적 구성(pluralistische Zusammensetzung)에 관한 헌법적 요청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2) 재단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9인의 이사를 지명하는 반면, 시청자위원회는 6인의 이사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시청자위원회보다 더 많은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면 이는 방송헌법상 다원적 구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9) Bundesverfassungsgesetz vom 10. Juli 1974 über die Sicherung der Unabhängigkeit des Rundfunks

반면, 주정부가 9인의 재단이사회 이사를 임명하고 국민의회 내 정당들의 추천을 받아 6인의 이사를 지명하며 중앙노사협의회가 5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3)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와 관련하여 이사의 임기는 4년이 원칙이지만, 방송공사법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지명하는 이사 18인과 시청자위원회가 지명하는 이사 6인은 새 정부가 구성되거나 시청자위원회가 재구성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체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율이 독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반면, 정당이 추천하는 지명한 6인의 이사와 사원을 대표하여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명한 5인의 이사가 조기에 교체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4)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공사법은 연방총리(또는 미디어 장관)가 17인의 시청자위원을 지명하고, 13인은 법에 명시된 다른 사회단체(상공회의소, 교회, 정당 아카데미 등)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연방총리(또는 미디어장관)가 다른 사회단체로부터의 지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청자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구성이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적 구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한편, 연방총리(또는 미디어장관)가 지명하는 17인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14개 사회단체를 대표하는데, 개별 단체에서 추천되는 위원의 수, 다시 말해 14개 사회단체 중 어느 단체의 추천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방송공사법이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율 또한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적 구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5) 위헌결정은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으로서 위헌결정조항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입법자는 그 때까지 새로운 규율을 할 시간을 가진다. 재단이사회 이사와 시청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 구성되는 재단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가 소집되는 날까지이다. 재단이사회의 이사와 시청자위원회

의 모든 위원이 지명되지 않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면 재단이사회와 시청자 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있다.

IV. 판단

1.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 요청

(1) 방송헌법에 따르면 방송과 방송조직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임무이다. 입법자의 규율은 특히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견의 다양성 고려, 프로그램의 균형성과 구성원 및 운영기관의 독립성이라는 네 가지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방송헌법 제1조 제2항).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방송헌법 제1조 제2항의 헌법적 요청 중에서 독립성과 다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해 왔다.

방송헌법과 유럽인권협약 제10조(특히 제10조 제1항 제3문)는 방송질서의 형성에서 방송의 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입법자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헌법에 규정된 제도적 요청에 더 잡은 것이며, 이것은 방송을 통한 공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적으로 보장된 방송질서에서 공영방송은 방송헌법과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그 기능에 걸맞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공영방송은 전체 방송질서에서 민주적·문화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공영방송에 대한 기능적·재정적 책임에는 방송헌법의 헌법상 원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설계할 의무와 공영방송사가 그러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작할 의무를 포함한다.

(2) 공영방송의 조직과 내부구조 또한 방송헌법의 요청에 부합해야 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사의 방송의 자유가 갖는 제도적 측면에 대해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의견의 다양성 고려, 공영방송사 차원의 프로그램의 균형 고려를 통해 뉴스나 생각을 전달할 기회가 실제로 존재할 때” (VfSlg. 10.948/1986)에만 공영방송사와 관련한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공영방송사의 주요 기관, 즉 재단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것이 운영기관의 독립성 보장이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 조항은 방송공사 내 합의제적 운영기관인 재단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의 지명 및 구성에 있어 그 어떠한 국가기관도 일방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운영기관의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히 공영방송사가 ‘공적 감시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민주적 제도 하에서의 대표성을 반영하고 합의제적 운영기관 구성에 공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요하다. 여기서 공영방송사의 합의제적 운영기관이 갖게 되는 독립성 보장은 공영방송사의 운영자들이 그 기능을 독자적이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독립성 보장은 운영기관 자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방송헌법상 의견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균형 요청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합의제적 운영기관을 구성할 때에는 다원성 요청을 고려하여 합의제 기관이 사실적 또는 법적으로 특정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다원성과 독립성 요청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

방송헌법에 따른 기관의 독립성 확보 요청은 공영방송사의 합의제 운영기관을 구성할 때 그 어떤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 때 공영방송사의 운영기관 구성에서 임명될 위원의 자격요건을 두거나 국가로부터 거리를 둔 조직의 추천권을 결부시켜 이것에 국가기관의 조직구성 결정이 법적으로 구속되도록 하고 해당요건에 따른 배제사유 외에는 국가기관의 선호에 따라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조직의 구성에 대해 입법자는 형성의 여지를 갖는다. 입법적 형성에서 주요한 사회 영역 또는 그룹의 대표성을 보장하여 다원성을 확보하는 것은 방송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다원성 보장의 요소이다.

방송헌법 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성이 없는 이해관계가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 재단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의 위헌성

(1) 연방정부의 과도한 영향력

연방정부는 국민의회를 대표하는 정당들의 추천에 따라 6인의 이사를 지명하는 것 외에 추가로 9인의 재단이사회 이사를 지명한다(방송사법 제20조 제1항 제1문 3호). 이러한 이사들의 숫자는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구성되고 국가와 분리된) 시청자위원회에서 지명하는 6인의 위원보다도 상대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구성은 방송공사 운영기관의 지명과 구성에서 독립성 및 다원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

(2) 조기 임기종료의 가능성

재단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4년이다. 연방 및 주 정부가 지명하는 9인의 재단이사회 이사와 시청자위원회가 지명하는 6인의 위원은 새로운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구성되거나 새로운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면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임기를 정하여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정당 대표가 지명하는 6인의 이사와 중앙노사협의회가 지명하는 5인의 이사의 경우 그 임기가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전자의 경우 특히 국민의회를 대표하는 각 정당이 적어도 1인의 이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어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중앙노사협의회를 대변하는 이사는 협의회를 통해 사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공사법 제20조 제4항 제2문은 제20조 제1항 제1문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위원 전체에 적용되고 위원들 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4항 제2문의 전체 규율이 방송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으로 판단한다.

(3) 다원성의 부족

연방정부와 시청자위원회가 임명할 재단이사회 이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높은 수준의 인적·전문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독립성 확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방송공사법은 연방정부와 시청자위원회의 이사 지명에서 다양성의 요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헌법적으로 중요하게 요청되는 이사회 구성의 다원성이 형해화될 수 있고, 연방정부와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인사를 지명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한 결정의 재량을 갖게 된다. 이것은 방송헌법 제1조 제1항에 반한다.

3.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의 위헌 여부

(1) 연방총리의 과도한 영향력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청자위원회는 방송공사법에서 직접 명시한 조직(대표적으로 사회적 파트너, 자영업자 협의체, 교회 등)이 13인의 위원을 지명하고, 나머지 17인은 추가로 연방총리가 대학, 예술 또는 노인 등 14개 분야(그룹)를 대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각 3인의 추천을 받아 그 중에서 지명한다(방송사법 제28조 제4항). 여기서 연방총리가 임명하는 17인의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대표적인 사회단체가 직접 지명하는 13명의 위원보다

다수이다. 이것은 방송헌법상의 독립성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입법자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대표적 사회단체가 직접 지명하는 위원이 연방총리(또는 미디어부 장관)가 사회단체의 추천명단으로부터 지명하는 위원과 적어도 동일한 정도로 대표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2) 연방총리의 과도한 재량

연방총리(또는 미디어부 장관)는 방송공사법에 명시된 분야 또는 그룹(교육, 예술, 스포츠, 청소년, 노인, 소수민족, 환경 보호 등)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각각 3인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 17인을 임명한다. 그러나 연방총리는 각 사회단체마다 3인씩 추천받은 사람 중 누구를 어떻게 지명할 것인지, 법에 특정된 14개의 사회 영역 내지 그룹 내에서 어떻게 17인의 위원을 배분하여 지명할 것인지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연방총리(또는 미디어부 장관)가 시청자위원회 위원 17명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광범위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방송공사의 독립성과 다원적 구성에 대한 헌법적 요청을 훼손하는 것이다.

V. 결정의 의의

오스트리아에서 헌법적 지위를 갖는 방송에 관한 헌법률 조항은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 확보를 헌법적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 잡아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및 통제기관의 구성과 임기를 정함에 있어 연방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지명 구조를 설계한 방송공사법 조항이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것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해서는 다차원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특히 헌법재판소가 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기준으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심사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